#### 2015년 04월 11일(토)

# 고 수 면 이 장 회 의 자 료



고 수 면

#### 총 무 팀

지방세:임설림(8153) 사업·상하수도:이문규(8152)

보 건:김순남(8156) 동향·민방위:박경태(8151)

### □ 각종 사건·사고 등 동향보고 협조

O 대 상: 각종 사건사고 여론동향 미담사례 등

○ 협조사항 : 동향 발생시 면사무소에 즉시 연락요망

#### □ 도난사고 빈발 주의요청

- 교량난간, 농산물, 비료 등 고수면 도난사고가 잦음
- 인적이 드문 곳의 각 종 적치물에 대한 주의 필요
-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 및 주의 당부
- 수상한 사람 발견 시 고수치안센터(562-0112) 혹은 면사무소 신고

#### □ 풍수해보험 가입신청 안내

O 신청기간 : 2015. 년 중

O 대상재해 : 태풍, 강풍, 홍수, 호우, 해일, 풍랑, 대설

O 대상시설 :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O 상품유형

- 주택(보험기간 1년, 일시납원칙) : 주택법제2조 주거용 건물 ※제외 : 건축물대장 등재되지 않은 건물, 부속건물(창고,외양간 등)

- 온실(비닐하우스를 포함한 농·임업용 목적의 온실) ※제외: 100m²미만의 온실, 농·임업용 이외의 온실

#### □ 가로등 고장 신고처 홍보

○ 신 고 처 : 고창군청 가로등 보수팀 ☎ 560-2418 ※ 군청으로 고장신고 하시면 더욱 신속히 수리 됨.

○ 신고내용 : 가로등 관리번호(예시 : 해리면 동호리 011) 및 고장내용

#### 물절약 실천을 위한 상수도사용료 감면 등 홍보

- O 홍보내용
  - 고창군상수도 급수조례 제54조, 제46조, 제45조,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도요금을 감면 또는 줄일 수 있음.
  - 누수로 인한 사용료감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 조 손가정, 3자녀이상의 자녀 둔 가정, 세대분할, 공장으로 등 록한 업체 중 업종변경(일반용→산업용)을 신청할 수 있도 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람.

#### □ 2015년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개시

O 목 적: 저수득층의 문화향유 기회 제공

O 대 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6세 이상

O 발급기한 : 2015. 4. 30.한

○ 지원금액: 연간 개인당 5만원

O 발급방식: 카드신청자 전원

O 발급현황 : 대상 170여명 중 119명(70%)

○ 상담안내 : 고수면사무소 ☎ 560-8153 임설림, 콜센터 1544-3412

#### "무장기포 기념제" 무장읍성 축제

- O 목 적
  - 동학농민혁명의 자주와 평등의 숭고한 정신계승
  - 무장기포의 역사적 의미 재조명하여 우리군 위상 제고

**○** 일 시 : 2015. 4. 25.(토) 09:00∼16:00

○ 장 소 : 공음면 구수 무장기포지 및 무장읍성

○ 주요행사 : 출정식, 진격로 걷기, 무혈입성재연, 기념식, 공연 등

○ 협조사항: 기념제 50명이상 참여, 민복착용, 기수단 6명 지정

#### 🧻 2015년 국가암 조기검진 및 건강검진 실시

O 기 간 : 2015년 12월 31일까지

○ 대 상: 2년 주기 생년월일(짝·홀수)시행 (2015년 **홀수년도**)

○ 검진항목: 5대암(위암, 유방암, 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요검사 및 신체계측 및 갑상선기능검사 등 기본검사

사업	구 분	대 상	내 용	비고
	위 암	의료급여수급자	○ 만 40세 이상 남·여	2년 간격
암 조 기	간 암	및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 ☞ 직장가입자 :	○ 만 40세 이상 남·여 ○ 간경변증이나 B형간염바이러스 항원보유자 ○ C형 간염바이러스 항체 양성 확인된 자	1년 간격
검	대장암	월 보험료83,000원 이하	○ 만 50세 이상 남·여	1년 간격
진	유방암	☞ 지역가입자 :	O 만 40세 이상 여성	2년 간격
	자궁암	월 보험료 89,000원 이하	O 만 30세 이상 여성	2년 간격

- 검진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검진기관 지정(고창군) ☞ 고창병원, 인암병원, 정내과, 임국희내과, 해리면현대의원
- O 출장검진기관에서 순회 출장검진도 실시
- 검진비용 : 국민건강보험공단 80% 국비 10% 지방비 10%
- O 마을 방송을 통한 건강검진 수시 홍보 협조(국정평가 대상)
- 대장암 검진을 위한 채변통 마을별 대상자 배부 협조

#### □ 2015년 달라지는 금연제도

- 2011년「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어, 법상 지정된 대형건물, 공공기관 청사 등 시설 내 흡연이 전면 금지(흡연실 허용)
-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
- ※ 금연클리닉(보건소, 면사무소 보건담당) 등록 신청시 금연패치, 금연파이프 등의 보조제 제공

#### □ 2015년 출산장려금 지원제도 변경 안내

○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모(부 또는 모)가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둘째자녀 이상 출산가정

○ 지원내용 : 출산순위에 따라 차등지원

- 변경 지원 : 2015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 **3자녀 이상 2회 분할지원**: 회당 50%씩 출생시 1회, 1년 후 지급분은 계속해서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할 경우 지위

- 출산장려금 지원 변경 전 · 후

	변경전	변경후	
구 분	2014년 12월31일	2015년1월1일	비고
	출생아까지	출생아부터	
2자녀	100만원	150만원	
3자녀	300만원	500만원	
4자녀	500만원(4자녀 이상)	700만원	
5자녀 이상		1,000만원	

#### O 구비서류

- 출산장려금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 출산장려금 지원대상확인서 부 (별지 제2호 서식)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
- 보호자 예금통장 사본 1부.

#### □ 만60세 이상 주민 폐렴구균 예방접종 실시

○ 접종대상 : 60세 이상 주민 중 미접종자※ 195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해당

O 접종시기: 연중

O 접종장소: 보건소, 면보건지소

○ 접종시간 : 평일 오전중(09:00~12:00)

O 문의전화 : 560-8168

### 과로 및 스트레스 예방생활수칙 안내

- 과로의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 자각증상을 느낄 때는 충분한 휴식과 수면, 적절한 영양 공급,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 증상이 완화되는데 도움을 준다.

#### - 전문의가 권하는 피로 해소법

- 1. 7~8시간의 충분한 수면과 30분 정도의 낮잠
- 2. 철분이 많은 음식과 비타민이 풍부한 야채, 과일 섭취
- 3. 담배나 상습적인 음주를 피하고 목욕을 자주 할 것
- 4. 건물 내에서 계단 이용 등 가벼운 운동의 생활화
- 5. 근육이완이나 명상, 복식호흡 등으로 스트레스 해소

#### - 과로사, 돌연사 예방 생활수칙

- 1. 비만은 건강의 적, 표준체중을 유지한다.
- 2. 하루 30분 이상 1주일에 적어도 3회 이상 운동한다.
- 3. 담배는 끊고 술은 삼간다.
- 4. 짜고 기름진 음식을 삼간다.
- 5. 온가족이 싱겁게 먹고 채소, 해조류, 과일을 즐겨먹는다.
- 6. 스트레스는 바로 해소하도록 하고 긍정적으로 살아간다.
- 7. 자신의 혈압, 혈당 및 콜레스테롤 수치를 알고 정상범위 내로 조절한다.
- 8. 국가 건강검진은 빠지지 않고 꼭 받고 의사와 정기적으로 상담한다.
- 9. 심근경색, 뇌졸중의 조기 증상과 대처요령을 숙지한다.
- 10. 응급환자 발생 즉시 119 또는 1339로 연락한다.

#### 주민복지팀

환경개선부담금:김희준(8143)

주민복지:이현정(8154)

#### □ 영농철 맞이 쓰레기 무단 투기 금지

O 기 간:상시

○ 현 실 태 : 각종 생활쓰레기 및 영농폐기물 무단 투기 다수 발생

음식물 쓰레기 하천변 등 무단 배출

○ 협조사항 : 주 1회 분리배출 마을 방송(방송안 붙임)

쓰레기 규격봉투 사용

재활용 쓰레기 종류별 분리 배출

대형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이용(전화. 1599-0903)

#### □ 저소득층 특정질환 의료비 지원사업 홍보

O 신청기간 : 연중

○ 대 상 자 :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O 대상질환: 인공관절(고관절, 슬관절), 요실금, 전립선 질환, 척추질환(허리디스크 등)

○ 지원방법: 검사와 수술 등 외래 및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금

○ 신청장소 : 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 ☎.560-8154

#### □ 복지수급자 정부양곡 구입 신청 홍보

○ 신청기간 : 신청 희망 월 1일~10일

○ 신청자격: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신청방법 : 본인부담금 22,200원 납부(20kg 1포)

1인 월10kg 분량 신청 가능(단독 가구의 경우 격월 1포 신청)

O 신청문의 : 주민복지팀 ☎.560-8154

### 쓰레기 배출방법 홍보방송(안)

면사무소에서 알려드립니다.

주민 여러분! 쓰레기 분리배출을 생활화 합시다.

일반 생활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재활용품은 속이 보이는 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류폐기물은 물기를 최대한 제거한 다음 전용용기에 배출하여 주시고, 모든 쓰레기는 해가 저물어 어두워진 이후에 일정한 장소에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토요일과 일요일 낮에는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으니 배출하지 맙시다.

쓰레기를 불법투기 하거나, 불법 소각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아름답고 청정한 명품 고창 조성을 위해 쓰레기 분리배출에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2~3회 반복 방송 실시)

### 산업경제팀

농지취득·기반조성:봉원엽(8145)

직불제:김성원(8161) 축산:문선옥(8162)

#### 🔲 2015년 벼 육묘용 경량상토 지원사업 추진

○ 추진기간 : 2015. 3. 26(목)한

O 사 업 량 : 21,440포/40L(1ha당 29포)

O 사 업 비 : 96,480천원(군비 50%, 자담 50%)

○ 지원단가 : 4,500원/40L(보조 2,250/자담 2,250)

○ 공급방법 : 농협중앙회 고창군지부(지역농협 공급)

O 내 용

- 마을별 배정기준은 2014년도 쌀소득 변동직불제 확정 면적

- 마을별 상토 공급업체 선정 및 농가별 공급

- 영농기 이전 경량상토 안전 사용교육(3월25일~3월31일 기간중 1일)

- 지원대상은 고창에 거주하는 군민에 한함

#### 2015년 벼 병해충(육묘상자용) 방제비 지원사업 추진

○ 신청기간 : 2015. 3. 26(목)한

○ 지원품목 : 벼 병해충(육묘상자용) 사전방제용 종자소독제

- 선정약제 6종(다카바에스, 듀엣, 롱킥, 리전트슈퍼, 모드니, 왕꿈)

○ 지원농가 : 고창군 농업인(타지역 농업인 제외)

○ 사 업 량 : 약2,300봉(0.3ha당 1봉)

※ 제 외: '14년도 고정직불금만 수령한 농지, '14년 친환경 인증농지

O 지 원 율 : 보조 50%, 자담 50%

○ 방제 약제별 판매(예정) 가격

제품명	업체명	봉당규격 (kg)	공급가격 ( <sup>원</sup> )	보조금 (원)	자부담 (원)	日
다카바에스	한국삼공	1	8,200	4,100	4,100	
듀엣	동방아그로	1	8,200	4,100	4,100	
롱킥	동부팜한농	1	8,200	4,100	4,100	
리전트슈퍼	바이엘크롭사이언스	1	9,800	4,900	4,900	
모드니	농협케미컬	1	11,000	5,000	6,000	
왕꿈	경농	1	8,000	4,000	4,000	

#### □ 2015년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사업 신청 및 변경사항 인내붙임1〉

- **○** 신청기한 : 동계작물 : 3. 2 ~ 3. 31, 하계작물 : 3. 2 ~ 6. 15
-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등록에 등록한자로 경영체등록필지에 한함
- 신청장소 : 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농지소재지 읍 · 면사무소 ※ 농지소재지의 범위는 직불금 신청면적이 가장넓은 읍 · 면사무소임
- O 주요 변경사항
  - 밭농업고정직불제도 추가
    - " 지목상관없이 '12년도 ~ '14년도까지 발농업이용 농지 추가(모든 발작물(묘목도 가능))
  - 지원단가 상향
  - 쌀고정직불금 수급면적에 따른 밭농업직불금 수급면적 제한 폐지등 ※상세 변경사항은 <붙임2> 참조

#### 15년 친환경농업직접직불제사업 신청 홍보

- 신청기간 : 2015. 3. 2 ~ 3. 31까지
- 대 상
  - 유기·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 ※ '10년 이전에 저농약인증을 받은 농업인 포함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 지급단가
  - 논 : 유기 600천원/ha, 400천원/ha, 저농약 217천원/ha
  - 밭 : 유기 1.200천원/ha. 무농약 1.000천원/ha. 저농약 524천원/ha
  - 유기지속직불 : 논 300천원/ha, 밭 600천원/ha
    - \* 쌀소득보전직불제 대상농지는 논으로, 그 외의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밭단가로 지급
- 지원한도 : 농가(경영체)당 0.1 ~ 5.0ha
- 지급기한 : 유기농산물 5년(5회), 무농약·저농약농산물 3년(3회)
  - ※ '15년 주요변경 사항 : 유기지속직불금 도입
    - 유기지속직불금은 유기농산물을 생산하여 직불금을 최장5년간 지급 (불연속인 경우5회자급)받은 필지에 대해 추가 3년간 지급(불연속인 경우3회 지급)
    - '10년까지 친환경농업직불금을 3회 수령하여 유기 5회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필지도 포함

#### | 봄철 산불예방 홍보 및 계도방송

- 산불취약기간 : 2015. 2. 1 ~ 5. 15
- O 중점 추진사항
  - 취약지 인접(산림연접지 100m이내) 농산폐기물 소각 절대금지
  - 3대산불 중점관리(오후5시이후산불, 동시다발산불, 재발화산불)
  - 산불 발생시 행정기관 즉시 신고로 초등 진화토록 주민 홍보
  - 마을이장 및 담당직원이 마을 산불계도방송 실시(하루3회이상)
  - 협조사항: 산불예방 안내 및 마을방송 홍보(붙임3.4)

**※** 산불신고: 면사무소(560-8145/8161), 산림축산과(560-2603)

#### □ 비가림하우스 화재예방 마을 자체 점검 홍보

- 대 상: 마을내 설치된 660㎡(200평)이상 시설하우스
- 점검내용: 누전차단기 설치여부, 전선규격사용여부, 전선 매설시
  - 전선관 사용여부, 하우스 주변 소각행위 등 화재예방 자체 점검
- 협조사항: 하우스 화재예방등 자체 점검할수 있도록 안내

#### □ 농업인 안전공제 농업인부담금 지원사업 신청

- 신청기간 : 연중(기 가입자는 가입시점 1년이내 갱신)
- 지원금액 : 농업인 부담금의 100%를 정액 지원
- 지원대상 : 만 15세~84세 영농에 종사하는 농림업인
  - 세대별 가입인원 제한 없음
  - 상시 직장 재직자, 사업자등록자는 제외
- 협조사항: 각 마을별 수요자들을 파악하여 조속히 신청토록 홍보

#### □ 고병원성 AI 및 구제역 방역대책 추진 홍보

- O 기 간 : 연중
- O 홍보사항
  - 가축사육 농장방문 자제
  - 사료차량 등 농장 진입시 자체소독 실시
  - 축사 내외부 소독철저 홍보 등

## <붙임1> '15년도 쌀소득직불제사업 시행지침 주요 변경사항

구 분	현 행(2014)	변 경(2015)	변경 사유
		<u>군·구 포함)</u> 에 소재하는 1만제곱미터 이상 농 지 경작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기준 완화로 대상자 확대
	원 이상 ○등록신청 연도 직전 2 년 이상 주소를 해당 시·구에 두고, 해당 시 구의 1천제곱미터 이상	○등록신청 연도 직전 1 년 이상 주소를 해당 시·구에 두고, 해당 시 구의 1천제곱미터 이상 농지를 직전 <u>1년 이상</u> 경작	
○신규진입 요건	전 2년이상 1만제곱미 터 이상 경작 ㅇ지급대상 농지에서 직	전 3년 기간 중 1년 이상 <u>1</u> 천	○'신규진입' 요건 완화로 대상자 확대 및 기존 수령자와 신규 신청자 간의 형평성 제고
○ <b>숭계</b> 대상 및 범위	승계만 인정 ○(요건) 배우자 및 직계		
○지급 <b>상한면적</b>	○지급상한면적 - 개인 : 30ha - 법인 : 50ha	<ul> <li>지급상한면적</li> <li>개인 : 30ha</li> <li>법인 : 50ha</li> <li>단, 들녘경영체 운영법 인은 400ha</li> </ul>	○들녘경영체 운영법인 지급상한면적 상향으로 영 농규모화 유도
○부당수령 <b>신고포상</b> 금	○건당 10만원, 1인 연 간 최대 100만원	○건당 <u>50만원</u> , 1인 연 간 최대 <u>200만원</u>	○포상금 수준 현실화로 신고 활성화를 통한 투 명성 제고 유도
○신청서류 제출		보'로 확인 가능한 경	○신청서류 간소화로 신 청자의 편의 제고
○신청 <b>시기</b>	o'14.2.1 ~ 6.15	°′15. <u>3.2</u> ~ 6.15	ㅇ시스템 정비

#### <붙임2> < '15년도 밭농업 직접지불사업 시행지침 주요 변경사항>

구 분	현 행(2014)	변 경(2015)	변경 사유
밭고정직불제 도입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현행 제도에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밭농업고정직불제도 <b>추가</b>	
지원대상 농지	- 공부상 지목이 밭인 토지로서 당해연도에 밭농업보조금 대상품목 재배에 이용되는 밭 - 지목과 상관없이 논농업고정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와 1998년 1월 1일 이후조성된 농지 중 전년도 10월부터 해당 연도 6월까지의 기간에 식량·사료작물을 재배에 이용되는 논	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 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 지 <b>추가</b>	밭고정직불제 도입으로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직전 2년이상 경 작한 농업인		
지원 품목		밭에 재배하는 모든 품목 (휴경, 시설면적 포함) <b>추가</b>	
지원 단가	- 밭재배 26개 품목 : 40만원/ha - 논 재배 식량·사료작물 : 40만원/ha	- 밭고정 : 25만원/ha - 밭재배 26개 품목 : 40만원/ha(밭고정 25 만원/ha 포함) - 논 재배 식량·사료작물 : 50만원/ha	받고정직불제 도입에 따른 기존 지원 품목과 차별화, 품목별 소득, 쌀관세화에 따른 여건 등을 고려
보조금 지급면적의 상한기준	쌀고정직불금 수급면적에 따른 밭농업직불금(26개 품 목) 수급면적 제한 - 5ha이상 8ha미만인 경우 밭농업보조금 지급상한은 3ha - 8ha이상인 경우 밭농업보 조금 지급상한은 2ha	폐지	밭고정직불제 시행과 쌀과의 형평성 등을 고 려 지급기준 완화

구 분	현 행(2014)	변 경(2015)	변경 사유
발농업보조금과 타 보조금 중복 지급 제 한 농지	목) 지급 제외 농지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고정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재배 식량·사료작물에 대한 직불금은 중복지급 가능)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제32조제1항에 따른 조건불리보조금지급대상 농지 -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경관보건보조금 지급대상	받고정직불제 도입으로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 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 칙」을 개정하여 일부 중 복지급 제한 대상 농지 조정
밭농업보조금 등록신 청 기간 등	등록신청 - 동계작물: 2. 1.~3.21. - 하계작물: 2. 1.~6.15. 이행점검 - 동계작물: 4. 1.~6.15. - 하계작물: 7. 1.~9.30.	등록신청 - 동계작물 : 3. 2.~3.31. - 하계작물 : 3. 2.~6.15. 이행점검 - 동계작물 : 4.13.~6.15. - 하계작물 : 7. 1.~9.30.	농업경영체등록정보일 제갱신 종료
이행점검 표본 선정	- 밭재배 26개 품목 : 30% 이상 - 논 재배 식량·사료작물 : 50%이상	<ul><li>받고정: 50%이상</li><li>발재배 26개 품목: 30%이상</li><li>스는 재배 식량·사료작물: 50%이상</li></ul>	밭고정 추가
보조금 부당수령 신 고포상금	_	밭고정직불금 부당수령에 대해 건당 50만원, 1인 연 간 최대 200만원	I 6 B보기의 또입에 된
직불제 상담 콜센터 (1670-8002) 업무 수 행기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 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불제 민원상담 업무를 농 관원으로 이관

#### 봄철 마을주민 산불예방 안내문

마을주민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고 산불을 발생케 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토록 하기 위해서는 마을이장님의 역할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산불예방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마을이장님 협조사항

- 1. 마을주민 산불예방 교육실시(마을 회의·행사 등)
  -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지역의 논·밭두렁과 농산폐기물 소각 금지 \*날씨가 건조하고 바람이 강하게 불때에는 100m 밖에서도 소각 금지
  - 산과 연접된 주택에서 쓰레기 소각 주의 계도
    - \*쓰레기 소각시 주택 앞마당에서 소각 조치
  - 산나물채취, 산책시 산림내에서는 화기물소지 및 불 피우는 행위 금지
  - 청명·한식 전후 묘 정비작업시 불 피우는 행위 금지

#### 2. 산불예방 홍보

● 산불조심기간(봄철 2.1~ 5.15, 가을철 11.1~12.15)동안 마을방송 매일 실시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는 시기에는 매일 3회 이상 방송 실시

#### 실수로 산불을 내도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 경로당, 부녀자 세대, 산 연접 농가 방문 산불조심 독려
- 타인 소유 산림에 방화한 자 : 7년~10년 이하의 징역
- 과실로 인하여 타인 또는 자기 소유의 산림을 불에 타게 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과태료
  - ▷허가없이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은 자 : **과태료** 100만원
  - ▷화기 또는 인화·발화물질을 소지하고 산림에 들어간 자 : **과태료 30만원**
  - ▷허가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자 : **과태료** 20만원
  - ▷산림 안에서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만들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자
    - : 과태료 30만원